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78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시행 2019. 6. 5.)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「초지법」 등 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함(안 제6조제6항)

1) 재산관리 담당부서장 ⇒ 재산관리 담당국장

나. 「초지법」에서 위임한 대부료를 신설(안 제24조제7항)

1)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.

다.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·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(안 제30조제5항·제6항제3호)

1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

라. 그 밖의 법령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함(안 제15조의2제1호, 제24조 제6항,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, 제29조

2) 「초지법」 제1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4. 26.~5. 2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(재산관리 담당부서장)”을 “(재산관리 담당국장)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

제24조제5항제1호 중 “실경작자”를 “농업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)의 100분의 1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5조제2항 및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2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고도의 기술”을 “신성장동력산업기술”로 “100만달러”를 “200만달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제7항·제8항을 제8항·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3.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제8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~④ (생략) ⑤ <u>민간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(<u>재산관리 담당부서장</u>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⑦~⑪ (생략)</p> <p>제15조의2(수의계약에 의한 사용·수익허가)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「<u>외국인토지법 시행령</u>」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.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</p> <p>제24조(대부료율) ①~④ (생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1. 농경지를 <u>실경작자</u>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. 삭제 (2016.12.28.) 3.~6. (생략) ⑥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(<u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</p> <p>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(<u>재산관리 담당국장</u>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⑦~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2(수의계약에 의한 사용·수익허가)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「<u>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.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</p> <p>제24조(대부료율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1. 농경지를 <u>농업인</u>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. 삭제 (2016.12.28.) 3.~6. (현행과 같음) ⑥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(<u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</u>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⑦ 「<u>초지법</u>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</p>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영 제35조 제2항 및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

나.~사. (생략)

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

가.~바. (생략)

사.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삭제(2016.12.28.)

③ (생략)

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3. (생략)

⑤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3항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.

<신 설>

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)의 100분의 1로 한다.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

나.~사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

가.~바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3. (현행과 같음)

⑦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3항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.

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

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

가.~라. (생략)

2.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

가.~라. (생략)

<신설>

⑦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”은 100퍼센트로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50을 경감한다.

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

가.~라. (현행과 같음)

2.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

가.~라. (현행과 같음)

3.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⑧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”은 100퍼센트로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삭제>